

고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

(의안번호 제965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3. 20.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3. 20.
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2006. 3. 28. 산업건설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정이유

자연환경의 변화 및 인위적인 개발로 인해 재해의 위험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개발행위에 앞서 재해영향성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
나. 위원장 임명 및 역할을 규정함(안 제4조)
다. 위원회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5조, 제7조)
라.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규정함 (안 제8조)
마.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에 대한 현지조사 규정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입법예고
- 고성군 공고 제2006-117호(2006. 2. 20 ~ 3. 12)
- 의견 제출사항 : 없음
나. 관계법령 및 근거
- 자연재해대책법(2005.01.27. 법률제7359호)
- 도 복구지원과 - 3798호 (2005.10.06) 표준 (안)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각종 국토의 개발로 인하여 태풍, 홍수시에 생기는 재해를 사전 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를 통하여 사전에 해소 하므로써 예산의 재투입과 각종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며,
- 나. 특히 행정에서 시행하는 도로개발, 하천정비, 산업단지조성과 사업자 시행인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지정, 공장 설립승인, 아파트건립과 각종 개발행위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, 분석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.
- 다. 2006. 2. 20 - 2006. 3.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,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을 심도있게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 보고 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조례안과 동떨어지지만 재난안전대책법에 의한 보상단가 현실화가 안된것이나 단가가 적다
- 답 : 피해조사 신고시 금년부터 국고보조 등 세분화되면서 보상에 차질없을 것입니다.
- 문 :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는 큰 사업장이나 면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적은규모 사업장도 조례에 명시가 필요한지?
- 답 :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는 규제가 늘어난다. 인허가 권별로 군·도위원회에서 검토하며 조례상에는 타법 검토를 전부 적용합니다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

- 2006. 3. 2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